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

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2023. 6. 13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6. 1. 구청장(지역경제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6. 13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경제국장 양미영)

가. 제안이유

- 2008년부터 지속된 특구 패션산업 기반확대, 패션페스티벌 개최 등 패션산업의 선두지역으로 평가받는 등 특구 지정 당시 계획사업을 완료하였고,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당초 특구 지정목적 달성한 바, 서울 강남 청담·압구정 패션특구가 지정 해제 되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 특구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 특구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

다. 참고 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○ 기 타 :

(1) 폐지조례안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3. 3. 31. ~ 2023. 4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제외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구청장(지역경제과)이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본 조례가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(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)」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14년간 지속된 특구 패션산업 기반확대 및 패션페스티벌 개최 등 패션산업의 선두지역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특구 지정목적은 달성하였고,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패션특구 지정해제로 폐지하려는 데 있음

본 조례는 4개장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제2장 규제특례 관련 제5조(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), 제6조(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), 제7조(도로법에 관한 특례), 제8조(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) 그리고 제3장 특화사업 운영의 제9조(특화사업 운영)이며, 나머지는 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임.

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의 폐지에 대해 집행기관(지역경제과)은 14년간 지속된 특구운영으로 패션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

등 당초 지정목적은 달성하였고, 지속한다고 해도 고용 및 신규사업 유치 등 지속적·직접적 경제효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,

- 강남구가 강남페스티벌 등 행사 추진 시 자체 사업추진 등이 가능해 규제 특례 활용도가 높지 않고, 특구 해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의 변화가 없어 중소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위원회의 특구 지정 해제 결정(2022.11.9.)을 수용하고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□ 다만, 보충적으로 집행기관이 지역여론과 상권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거나 조사하였는지는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할 것임.

□ 집행기관(지역경제과)이 특구지정해제와 본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지역여론과 상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거나, 이와 관련하여 큰 이견들이 없다면, 집행기관 결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

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6. 1.
제 출 자 : 강남구청장

1. 제안이유

2008년부터 지속된 특구 패션산업 기반확대, 패션페스티벌 개최 등 패션산업의 선두지역으로 평가받는 등 특구 지정 당시 계획사업을 완료하였고,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당초 특구 지정목적은 달성한 바, 서울 강남 청담·압구정 패션특구가 지정 해제 되어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 특구 운영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 특구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(1) 폐지조례안, 별첨
- (2) 입법예고(2023. 3. 31. ~ 2023. 4. 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부패영향평가 : 제외
- 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·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